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지역경제과	1

(2013. 9. 3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8월 27일

나. 의안번호 : 13-70

4. 관련근거

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,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8조제2항에서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- (2)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- (3)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함.
 -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 ~ 오전 8시 ⇒ 오전 0시 ~ 오전 10시
 - 의무휴업일 지정 :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⇒ 매월 2일
 - ※ 공휴일 중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.
- (4)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을 변경함.
 -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%에서 55%로 상향조정
- (5) 안 제14조의2제2항 ~ 제4항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.

[검토의견]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일부 개정 되어 2013. 4. 24자로 시행됨에 따라,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,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『유통산업발전법』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